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번호	2052
------	------

2020년 12월 22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10월 30일 김인호 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02일
- 상정일자 : 제298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0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인호 의원)

1. 제안이유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비방이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 이에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차별의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감염병 병력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3조 신설).

나. 감염병 병력자에 관한 사회복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34조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

III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개정안은 코로나-19 등 신종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감염자와 그 가족 등 격리대상자들에 대한 비방과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차별을 금지하고 감염병 병력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됨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- 코로나-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병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, 혐오 등 감염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.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병이라는 재난적 위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었음.¹⁾
- 코로나 19 확산 초기부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집단이 낙인과 차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누구도 배제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음.²⁾
 - 지난 3월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신천지, 대구 주민 등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. 이런 낙인효과로 인해 감염자 및 접촉자들을 숨게 만들어 감염병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였음.

1) '코로나19와 인권 : 인간의 존엄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'(2020.06.23.,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) 발표 내용

2)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(2020.4.27.) 「COVID-19지침」, 『COVID-19 관련 국제인권규범모음집(국가인권위 편역)』

- 동 조례 개정안 제33조에서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고, 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또한, 제34조에서 감염병 병력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은 시책 및 메뉴얼을 마련하고 감염병 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, 관련 교육의 실시,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33조(차별금지) ①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·구별·제한·배제·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u><신 설></u>	<p>제34조(사회복귀 지원 등) ① 시장은 감염병 병력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</p>

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
을 작성 및 배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염병
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 감염
병 병력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
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
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
본청 및 산하기관의 직원을 대상
으로 감염병 병력자의 사회복귀
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
있다.

④ 시장은 감염병 병력자에 대한
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원활히
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
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
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
위탁할 수 있다.

-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³⁾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,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않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3)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-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써 감염병환자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감염병 완치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.
 - 또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8조⁴⁾제1항에서 ‘사업주는 감염병, 정신질환 등의 질병자들에 대해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’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 제2항에서 ‘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시에는 지체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’라고 하여 질병 완치 이후 감염병 병력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.
 -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염병의 경우 감염 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적인 관계가 들어나게 됨으로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음. 코로나 19 감염자들이 완치 후에도 주변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.
-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금지 등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완치자의 일상회복과 사회복귀를 돋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.

4) 제138조(질병자의 근로 금지·제한) ① 사업주는 감염병,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3 종합의견

-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법제도 및 정책 등은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치료 등에 집중되어 있고 완치 후 감염병 병력자들의 인권침해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관련 정책 등이 부재한 상황임.
- 동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감염병 병력자들의 인권 침해와 사회 복귀 등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하겠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